|  |  |  |
| --- | --- | --- |
|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혜택 정책 지침**  국가세무총국  ‘코로나19’ 방역 형세가 심각한 가운데 세무부서는 신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 지시 사항과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있고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으며 전력을 다해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일전에 세무부서와 재정부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자 일련의 연합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핵심 분야와 중점 업종에 대한 다양한 조세혜택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현단계 세무부서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조세혜택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며 납세자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안전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고 납세자가 제반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새로 출범된 ‘코로나19’ 방역 지원 조세혜택 정책을 취합 정리하여 이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방호•치료 지원, 물품공급 지원, 공익성 기부 격려, 영업•조업 재개 지원 네개 방면에 관한 12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   1. **방호•치료 지원** 2.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3.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4. **물품공급 지원** 5.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6.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7.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8.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9.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0. **공익성 기부 권장** 11.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12.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13.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14.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15. **영업•조업 재개 지원** 16.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혜택 정책 지침 모음**   1. **방호•치료 지원** 2.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이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는 각급 정부가 규정한 수당과 장려금 기준이 포함된다.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통제 업무 수행인력에게 지급되는 임시 업무수당과 장려금도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1.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업체•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용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을 지급받는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은 임금•급여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1. **물품공급 지원** 2.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는 월 단위로 관할세무기관에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이라 함은 2019년 12월 말 대비 새로 증가한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지칭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로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공중교통운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생활 서비스,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용역•무형자산•부동산 판매에 관한 주석>(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재정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4.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관련 설비에 대해 당기 원가에 일괄적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구체적인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혜택 정책 관리 등은 <국가세무총국의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2018년 제46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기업은 납세신고 시 관련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고정자산 일괄 공제’ 란에 작성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대상]**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면세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1. **공익성 기부 격려** 2.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이 접수한 기부금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을 칭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기부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발행한 기부접수증에 의하여 세전공제 수속을 이행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물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수속 이행 시와 <개인소득세 공익자선사업 기부액수 공제명세표> 작성 시 비고란에 ‘직접 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접수증은 세전공제의 근거가 되며 스스로 비치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업체•기관 및 자영업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 및 자영업자가 자가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치거나 직접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소비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소비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비세 납세신고 시 소비세납세신고표 및 <당기감(면)세액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소비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소비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소비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에 규정한 면세수입 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입 품목에 진단키트, 소독물품, 방호용품, 구급차, 방역차, 소독차, 응급지휘차를 추가한다. 2. 면세 범위에 국내 유관 정부부서, 기업•사업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중국 방문 외국인 또는 재중 외국인이 해외 또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입하여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국내 가공무역기업이 기부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기부물품은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기 제(1)호 또는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부대상자에 성(省)급 인민정부 또는 그가 지정한 업체•기관을 추가한다. 성(省)급 인민정부는 그가 지정한 업체•기관 명단을 공문서로 소재지 직속세관 및 성(省)급 세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6호를 적용받는 면세 수입물품에 대해응당히 면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 환급처리한다. 그중에서 이미 수입세금을 징수하였으나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발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용 수입물품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의 환급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소비세의 환급처리만 신청한다. 유관 수입업체•기관은 2020년 9월 30일 전에 세관에 세금 환급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면세 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자선기부물품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제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02호) 2.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3. **영업•조업 재개 지원** 4.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적용 대상]**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이라 함은 교통운송, 외식, 숙박, 관광(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 관리 2개 유형 포함) 4대 업종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 업종 분류>에 따라 집행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주영업활동 매출액이 총 매출액(비과세소득 및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이 규정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2020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  | **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指引**  国家税务总局    面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的严峻形势，税务部门深入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一系列重要指示精神，坚决执行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全力参与疫情防控工作。  近日，财税部门联合发布系列公告，明确自2020年1月1日起实施一系列聚焦疫情防控关键领域和重点行业的税收优惠政策，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疫情就是命令、防控就是责任，确保国家支持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落实到位，让纳税人实实在在享受到相关税收优惠，为纳税人提供高效便捷安全的办税服务，是税务部门当前的首要任务。  为更好发挥税收支持疫情防控的职能作用，帮助纳税人准确掌握和及时适用各项税收政策，税务总局对新出台的支持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进行了梳理，形成了本指引，共涉及支持防护救治、支持物资供应、鼓励公益捐赠、支持复工复产四个方面12项政策。  **一、支持防护救治**  1.取得政府规定标准的疫情防治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  2.个人取得单位发放的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的医药防护用品等免征个人所得税。  **二、支持物资供应**  3.对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全额退还增值税增量留抵税额；  4.纳税人提供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运输收入免征增值税；  5.纳税人提供公共交通运输服务、生活服务及居民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收入免征增值税；  6.对疫情防控重点物资生产企业扩大产能购置设备允许企业所得税税前一次性扣除；  7.对卫生健康主管部门组织进口的直接用于防控疫情物资免征关税。  **三、鼓励公益捐赠**  8.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应对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企业所得税或个人所得税税前全额扣除；  9.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应对疫情物品允许企业所得税或个人所得税税前全额扣除；  10.无偿捐赠应对疫情的货物免征增值税、消费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11.扩大捐赠免税进口范围。  **四、支持复工复产**  12.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2020年度发生的亏损最长结转年限延长至8年。  **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指引汇编**  **一、支持防护救治**  **1.取得政府规定标准的疫情防治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  【享受主体】  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对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按照政府规定标准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政府规定标准包括各级政府规定的补助和奖金标准。  对省级及省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对参与疫情防控人员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比照执行。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政策依据】  《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2020年第10号）  **2.个人取得单位发放的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的医药防护用品等免征个人所得税**  【享受主体】  取得单位发放的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的个人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单位发给个人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不计入工资、薪金收入，免征个人所得税。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政策依据】  《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2020年第10号）  **二、支持物资供应**  **3.对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全额退还增值税增量留抵税额**  【享受主体】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可以按月向主管税务机关申请全额退还增值税增量留抵税额。增量留抵税额，是指与2019年12月底相比新增加的期末留抵税额。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名单，由省级及省级以上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确定。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适用增值税增量留抵退税政策的，应当在增值税纳税申报期内，完成本期增值税纳税申报后，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4.纳税人提供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运输收入免征增值税**  【享受主体】  提供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运输服务的纳税人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对纳税人运输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的具体范围，由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确定。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纳税人运输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的，免征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纳税人按规定享受免征增值税优惠的，可自主进行免税申报，无需办理有关免税备案手续，但应将相关证明材料留存备查。在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应当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及《增值税减免税申报明细表》相应栏次。  纳税人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按规定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纳税人已将适用免税政策的销售额、销售数量，按照征税销售额、销售数量进行增值税申报的，可以选择更正当期申报或者在下期申报时调整。已征应予免征的增值税税款，可以予以退还或者抵减纳税人以后应缴纳的增值税税款。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5.纳税人提供公共交通运输服务、生活服务及居民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收入免征增值税**  【享受主体】  提供公共交通运输服务、生活服务，以及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的纳税人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对纳税人提供公共交通运输服务、生活服务，以及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  公共交通运输服务的具体范围，按照《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财税〔2016〕36号印发）执行。  生活服务、快递收派服务的具体范围，按照《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财税〔2016〕36号印发）执行。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纳税人提供公共交通运输服务、生活服务，以及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的，免征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纳税人按规定享受免征增值税优惠的，可自主进行免税申报，无需办理有关免税备案手续，但应将相关证明材料留存备查。在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应当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及《增值税减免税申报明细表》相应栏次。  纳税人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按规定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纳税人已将适用免税政策的销售额、销售数量，按照征税销售额、销售数量进行增值税申报的，可以选择更正当期申报或者在下期申报时调整。已征应予免征的增值税税款，可以予以退还或者抵减纳税人以后应缴纳的增值税税款。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  （2）《财政部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  （3）《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6.对疫情防控重点物资生产企业扩大产能购置设备允许企业所得税税前一次性扣除**  【享受主体】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对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为扩大产能新购置的相关设备，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名单，由省级及省级以上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确定。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适用一次性企业所得税税前扣除政策的，在优惠政策管理等方面参照《国家税务总局关于设备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执行问题的公告》（2018年第46号）的规定执行。企业在纳税申报时将相关情况填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固定资产一次性扣除”行次。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7.对卫生健康主管部门组织进口的直接用于防控疫情物资免征关税**  【享受主体】  卫生健康主管部门组织进口的直接用于防控疫情物资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至2020年3月31日，对卫生健康主管部门组织进口的直接用于防控疫情物资免征关税。  免税进口物资，可按照或比照海关总署公告2020年第17号，先登记放行，再按规定补办相关手续。  【政策依据】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关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免税政策的公告》（2020年第6号）  **三、鼓励公益捐赠**  **8.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应对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企业所得税或个人所得税税前全额扣除**  【享受主体】  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对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行捐赠的企业和个人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企业和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在计算企业所得税或个人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  国家机关、公益性社会组织接受的捐赠，应专项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工作，不得挪作他用。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公益性社会组织”是指依法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社会组织。企业享受规定的全额税前扣除政策的，采取“自行判别、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的方式，并将捐赠全额扣除情况填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相应行次。个人享受规定的全额税前扣除政策的，按照《财政部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2019年第99号）有关规定执行。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9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9.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应对疫情物品允许企业所得税或个人所得税税前全额扣除**  【享受主体】  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物品的企业和个人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企业和个人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物品，允许在计算企业所得税或个人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  捐赠人凭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开具的捐赠接收函办理税前扣除事宜。  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接受的捐赠，应专项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工作，不得挪作他用。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企业享受规定的全额税前扣除政策的，采取“自行判别、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的方式，并将捐赠全额扣除情况填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相应行次。个人享受规定的全额税前扣除政策的，按照《财政部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2019年第99号）有关规定执行；在办理个人所得税税前扣除、填写《个人所得税公益慈善事业捐赠扣除明细表》时，应当在备注栏注明“直接捐赠”。  企业和个人取得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开具的捐赠接收函，作为税前扣除依据自行留存备查。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9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10.无偿捐赠应对疫情的货物免征增值税、消费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享受主体】  无偿捐赠应对疫情货物的单位和个体工商户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单位和个体工商户将自产、委托加工或购买的货物，通过公益性社会组织和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或者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无偿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免征增值税、消费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上述优惠政策适用的截止日期将视疫情情况另行公告。  纳税人按规定享受免征增值税、消费税优惠的，可自主进行免税申报，无需办理有关免税备案手续，但应将相关证明材料留存备查。在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应当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及《增值税减免税申报明细表》相应栏次；在办理消费税纳税申报时，应当填写消费税纳税申报表及《本期减（免）税额明细表》相应栏次。  纳税人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按规定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纳税人已将适用免税政策的销售额、销售数量，按照征税销售额、销售数量进行增值税、消费税纳税申报的，可以选择更正当期申报或者在下期申报时调整。已征应予免征的增值税、消费税税款，可以予以退还或者分别抵减纳税人以后应缴纳的增值税、消费税税款。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9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11.扩大捐赠免税进口范围**  【享受主体】  防控疫情捐赠进口物资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至2020年3月31日，适度扩大《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规定的免税进口范围，对捐赠用于疫情防控的进口物资，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1）进口物资增加试剂，消毒物品，防护用品，救护车、防疫车、消毒用车、应急指挥车。  （2）免税范围增加国内有关政府部门、企事业单位、社会团体、个人以及来华或在华的外国公民从境外或海关特殊监管区域进口并直接捐赠；境内加工贸易企业捐赠。捐赠物资应直接用于防控疫情且符合前述第（1）项或《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规定。  （3）受赠人增加省级民政部门或其指定的单位。省级民政部门将指定的单位名单函告所在地直属海关及省级税务部门。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公告2020年第6号项下免税进口物资，已征收的应免税款予以退还。其中，已征税进口且尚未申报增值税进项税额抵扣的，可凭主管税务机关出具的《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增值税进项税额未抵扣证明》，向海关申请办理退还已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手续；已申报增值税进项税额抵扣的，仅向海关申请办理退还已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消费税手续。有关进口单位应在2020年9月30日前向海关办理退税手续。  免税进口物资，可按照或比照海关总署公告2020年第17号，先登记放行，再按规定补办相关手续。  【政策依据】  （1）《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公告2015年第102号发布）  （2）《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关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免税政策的公告》（2020年第6号）  **四、支持复工复产**  **12.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2020年度发生的亏损最长结转年限延长至8年**  【享受主体】  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  【优惠内容】  自2020年1月1日起，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2020年度发生的亏损，最长结转年限由5年延长至8年。  困难行业企业，包括交通运输、餐饮、住宿、旅游（指旅行社及相关服务、游览景区管理两类）四大类，具体判断标准按照现行《国民经济行业分类》执行。困难行业企业2020年度主营业务收入须占收入总额（剔除不征税收入和投资收益）的50%以上。  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按规定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的，应当在2020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通过电子税务局提交《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  【政策依据】  （1）《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  （2）《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 |